

## 한국성서대학교 학사 규정

제정 : 1997. 03. 01.  
 개정 : 2019. 01. 11.  
 개정 : 2019. 02. 01.  
 개정 : 2019. 02. 15.  
 개정 : 2019. 08. 02.  
 개정 : 2019. 10. 04.  
 개정 : 2019. 11. 08.  
 개정 : 2020. 01. 03.  
 개정 : 2020. 06. 05.  
 개정 : 2020. 11. 06.  
 개정 : 2021. 08.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02. 11.

담당 : 교학팀(02-950-5406)

### ----- 목 차 -----

제 1 조(목적)	제 2 조(수강신청)	제 2 조의 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제 3 조(편입생의 수강신청)
제 4 조(수강신청변경)	제 5 조(수강신청과목 철회)	제 6 조(폐강)	제 7 조(출석)
제 8 조(결석)	제 9 조(결석인정범위)	제 10 조(재수강 교과목)	제 11 조(재수강 성적부여)
제 12 조(휴학절차)	제 13 조(휴학기간)	제 14 조(복학절차)	제 15 조(자퇴)
제 16 조(제적)	제 17 조(재입학)	제 18 조(편입학 자격)	제 19 조(재입학불허)
제 20 조(편입학취소)	제 21 조(학점인정)	제 22 조(적용범위)	제 23 조(이수자격)
제 24 조(이수절차)	제 25 조(이중전공취소)	제 26 조(학위수여)	제 27 조(적용범위)
제 28 조(이수자격)	제 29 조(이수절차)	제 30 조(복수전공취소)	제 31 조(학위수여)
제 32 조(적용범위)	제 33 조(이수자격)	제 34 조(이수절차)	제 35 조(이수취소)
제 36 조(전과)	제 37 조(교육과정)	제 38 조(수업계획서 작성배부)	제 39 조(출강확인)
제 40 조(교수방법 협의)	제 41 조(휴 · 결강)	제 42 조(보강)	제 43 조(편입생 학점)
제 44 조(미 신청과목의 학점처리)	제 45 조(신청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	제 46 조(부정행위과목의 학점처리)	제 47 조(성적평가방법)
제 48 조(조기졸업)	제 49 조(학업성적)	제 50 조(성적평가)	제 51 조(평점평균)
제 51 조의 2(백분율)	제 52 조(성적보류처리)	제 53 조(성적이의신청)	제 54 조(추가시험)
제 55 조(재학 중 군입대)	제 56 조(성적취소)	제 57 조(특별처리)	제 58 조(학사경고)
제 59 조(유급)	제 60 조(공고)	제 61 조(분납)	제 62 조(납입금 반환)
제 63 조(납입금 예치)	제 64 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제 65 조(학점등록)	제 66 조(장애학생 학점등록)

제67조(정정신청) 제71조(졸업)	납입금 제68조(상벌기재) 제72조(수료)	제69조(증명발급) 제73조(계절강좌)	제70조(조기졸업)
------------------------	-------------------------------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 제2장 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① (개정11.08.05.)(개정15.02.06.)(삭제15.02.06.)

- ② 수강신청은 주·야간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학적은 입학 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수강신청은 수강인원,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 ④ 삭제(개정16.08.05.)
- ⑤ 삭제(03.09.)
- ⑥ 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03.01.01.)
- ⑦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은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06.06.22.)

**제2조의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① 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19.02.15.)

- ② 교수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수강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19.02.15.)
- ③ 사전 신고된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 교학처에 보고한다.(신설19.02.15.)
- ④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을 F 처리 한다.(신설19.02.15.)

**제3조(편입생의 수강신청)** ① 일반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의한다.

- ② 전 대학교에서의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이수과목인정서를 제출하여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다.(개정15.02.06.)
- ③ 본 대학에서 요구 시 전공필수 외에도 특정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변경)** ① 수강신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잘못 기재한 사항(특별히 강좌코드)은 학생이 책임지며 이로 인한 수정은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개정18.12.14.)

-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과 과목 폐강으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에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개정18.12.14.)

- 제5조(수강신청과목 철회)** ①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수강신청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17.04.07.) (개정 18.12.14.)
-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개정17.04.07.)
-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제6조(폐강)**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미달 될 때에는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선택과목 : 15명 미만(일부개정15.02.06.)(개정20.01.03.)
2. 전공선택과목 : 12명 미만(일부개정15.02.06.)(개정20.01.03.)
3. 삭제(개정15.02.06.)
4. 교과목 및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1.03.)

### 제3장 출석과 결석

**제7조(출석)**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개정16.04.08.)

- 제8조(결석)** ① 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 처리한다.(개정18.02.09.)
- ②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결석인정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그 기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기말고사 및 계절학기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20.06.05.)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출산	본인	20일	출산확인서
	배우자	5일	
혈족사망	부모·자녀·배우자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형제자매	3일	
본인질병	입원	해당기간 (최대3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
	격리		
병무관계	신체검사	해당기간	참석확인서(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지원시험		
	예비군 및 민방위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해당기간 (최대3주)	전역증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해당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해당기간 (최대4주)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학교 공식행사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 ② 본인 질병으로(증빙서류-진료확인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되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19.11.08.)
- ③ 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결석계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출결을 반영한다.(개정19.11.08.)(개정

20.11.06)

④ (삭제19.11.08.)

## 제4장 재수강

**제10조(재수강 교과목)**(삭제20.01.03.)

**제11조(재수강 성적부여)** ① 재수강은 교과목당 1회에 한하며, 취득성적이 D+이하만 재수강을 허용한다.(개정20.01.03.)

②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시까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1.03.)

③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은 B+ 이하이다.(개정20.01.03.)

④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과목 'R'(Retake)로 표기한다.(개정20.01.03.)

## 제5장 휴학(개정13.11.08.)

**제12조(휴학절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에 사유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 도서관, 예비군중대(남자인 경우), 담당자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자는 제적된다.(개정15.02.06.)

**제13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교학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5.08.)(개정17.07.07.)(개정20.11.06)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및 육아(임신, 출산),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복무는 병역의무기간에 한하고, 육아와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15.02.06.)

③ 삭제(개정15.02.06.)

④ 신입(편입)생에게는 해당 첫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사유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5.08.)(개정19.10.04.)(개정 21. 08. 06.)

⑤ 휴학연장은 추가 1회 휴학 횟수로 산정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5.05.08.)

## 제6장 복학

**제14조(복학절차)**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해야한다.(개정15.02.06.)

- ② 삭제(개정15.02.06.)
- ③ 복학이 결정된 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15.02.06.)
- ④ 삭제(개정15.02.06.)
- ⑤ 입대환자가 복학하는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이수 해당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15.02.06.)
- ⑥ 군입대 휴학자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역할 수 있는 자로서 복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2.06.)

## 제7장 퇴학과 제적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5.02.06.)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다만 제8호와 제9호 해당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16.03.11.)(개정17.08.11.)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개강한지 3주 이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단, 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등록을 필하고 휴학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삭제(개정16.03.11.)
6.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분납한 자가 분납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한다.
8.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16.03.11.)
9. 2회 연속 유급한 자(신설16.03.11.)

## 제8장 재입학과 편입학

**제1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 허가) 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원적과 동일학년 이하 1회에 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 이상 재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09.11.20.)

③ (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의 면접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8.12.14.)

**제18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입학 및 일반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품행 및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3. 편입학은 3학년 1학기과 2학기 개강 전에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개정15.02.06.)
4. 외교관자녀, 상사주재원,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등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 학생은 2학년 또는 3학

년 편입이 가능하다.(개정15.02.06.)

5.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 귀국한 자비 유학생들의 일반편입학은 3학년 편입만 가능하다.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기를 뛰어서는 허락하지 않으며 학기가 중복되는 재입학은 불허한다.(개정15.02.06.)

**제19조(재입학불허)** 제1학년 학생으로서 제1학기에 제적된 자는 제2학기에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0조(편입학취소)** ① 편입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서 허위가 나타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②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21조(학점인정)** 편입학생에게 65학점을 인정하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15.02.06.)(개정18.11.30.)(개정19.02.01.)

## 제9장 이중전공(신설18.02.09.)(개정19.01.11.)

**제22조(적용범위)** ① 모든 학과를 이중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개정19.01.11.)

② 이중전공자의 수는 학생정원의 100% 이내로 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이중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19.01.11.)

**제23조(이수자격)** ① 이중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가능하며 신청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교양필수, 제1전공 전공필수, 신앙훈련 등)를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19.01.11.)(개정20.01.03.)

②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24조(이수절차)** ① 이중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이중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 제1전공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승인을 받아, 이중전공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19.01.11.)

② 이중전공 신청자가 승인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개정19.01.11.)

**제25조(이중전공취소)** 이중전공 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19.01.11.)

**제26조(학위수여)** 이중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2개의 학위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개정19.01.11.)

## 제10장 복수전공

**제27조(적용범위)** ① 모든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개정15.02.06.)(개정18.02.09.)

② 복수전공자의 수는 해당학과 학생정원의 100% 이내로 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28조(이수자격)** ① 복수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가능하며 신청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교양필수, 제1전공 전공필수, 신앙훈련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15.02.06.)(개정20.01.03.)

②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라야 한다.(개정15.05.08.)(개정18.02.09.)

**제29조(이수절차)**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복수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 제1전공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일부개정15.02.06.)

② 복수전공 신청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

**제30조(복수전공취소)** 복수전공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31조(학위수여)**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 제11장 부전공 및 융합모듈(신설18.02.09)

**제32조(적용범위)** ① 모든 학과를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개정20.01.03.)

② 부전공자 및 융합모듈 이수자의 수는 해당학과 학생정원의 100% 이내로 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20.01.03.)

**제33조(이수자격)** 부전공 및 융합모듈은 입학시 부터 이수할 수 있다.(개정20.01.03.)

**제34조(이수절차)** ①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교학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개정20.01.03.)

②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이수한 자는 졸업증명서에 부전공 및 융합모듈명이 명기된다.(개정20.01.03.)

**제35조(이수취소)** 부전공 및 융합모듈 이수 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개정20.01.03.)

## 제12장 전과(개정15.02.06.)

- 제36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개정15.02.06.)(개정20.01.03.)
- ② (강등전과) 3학년에서 2학년으로 강등하여 전과할 수 있다.(개정15.02.06.)
- ③ (전과허가)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7이상이면 허가 할 수 있다. 전과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며, 전출·전입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2.06.)(개정18.02.09.)
- ④ (전과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학과에 정해진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전입학과의 학과장교수와 심층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출학과의 승인서와 전입학과의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학과별 전형 방법 및 선발 인원은 학과에서 정하여 매 학기 초 공고한다.(개정 15.02.06.)
- ⑤ (과정이수)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15.02.06.)
- ⑥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이 전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신설06.12.04.)(개정15.02.06.)(개정18.02.09.)

### 제13장 교과이수

- 제3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일립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으로 구성된다. (개정 18.02.09.)
- ② 이수구분은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 교직, 일반선택으로 한다.
-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8.02.09.)

### 제14장 수업관리

- 제38조(수업계획서 작성배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14일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 입력하여야 한다.(개정15.02.06.)(개정16.12.09.)
- ② 수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수내용, 진도계획, 교수방법, 참고도서, 과제, 평가방법으로 한다.(개정 16.08.05.)
- ③ 수업계획서는 학기 초에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16.08.05.)
- ④ 수업계획서 내용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소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개정03.01.01.)(개정 16.08.05.)

- 제39조(출강확인)** ① 강사와 겸임교원은 강의 시작 전에 출강확인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8.02.09.)(개정20.11.06)
- ② 출강확인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교시는 결강한 것으로 처리되며, 보강을 하여야 한다.(개정 18.02.09.)

- 제40조(교수방법 협의)** ① 학과장은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18.12.14.)

② 동일교과를 2명 이상의 교수자가 담당할 경우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06)

**제41조(휴·결강)** ①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승인신청서와 보강계획 및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15.02.06.)(개정20.11.06)

②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때에는 교학 처장은 즉시 총장 명의로 보강 통지서를 발송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③ 학과, 학년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이 행사계획서와 보강계획 및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15.02.06.)(개정20.11.06)

**제42조(보강)** ① 휴·결강 또는 공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담당교수는 보강을 하고, 교학처는 계획대로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06)

② (삭제20.11.06)

## 제15장 학점

**제43조(편입생 학점)** 삭제(개정18.11.30.)

**제44조(미 신청 과목의 학점처리)** 수강신청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15.02.06.)

**제45조(신청 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 수강신청 과목 중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46조(부정행위 과목의 학점처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학기 부정행위 과목 및 당해 학기 경건훈련 과목의 점수를 몰수한다.

**제47조(성적평가방법)** 성적평가는 각 과목별로 평점 4.3만점으로 하며 출석 및 학습 태도 20%, 중간고사 성적40%, 기말고사 성적 40%의 비율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성적은 최소 1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개정15.02.06.)(개정18.02.09.)

**제48조(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정상적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장 시험과 성적

**제49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18.08.07.)

등급	평점	점수
A+	4.3	97-100
A	4.0	93-96
A-	3.7	90-92
B+	3.3	87-89
B	3.0	83-86
B-	2.7	80-82
C+	2.3	77-79
C	2.0	73-76
C-	1.7	70-72
D+	1.3	67-69
D	1.0	63-66
D-	0.7	60-62
F	0	59이하
I	성적보류(Incomplete)	

**제50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A: 30% 이하, A+B: 70% 이하, C이하: 30% 이상 범위로 한다. (개정16.08.05.)(개정17.07.07.)(개정19.08.0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삭제14.02.20.)
  2. 전공필수 실습교과
  3. (삭제14.02.20.)
  4.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개정14.02.20.)
  5. 전공선택·교직의 실습교과(실습기관 또는 현장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경우)(신설 16.08.05.)(개정19.08.02.)
  6. 계절학기 10명 이하 강좌(신설17.07.07.)
  7. 실용영어 및 한국어 교과(신설17.07.07.)
- ③ PASS과목의 성적평가기준은 총점 70점 이상 시 P, 총점 70점 미만 시 F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성적평가 방법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7.08.11.)(개정21.11.05)

**제51조(평점평균)**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한다.(개정16.03.11.)

$$[(\text{교과목별 평점} \times \text{학점}) \text{의 총합}] \div \text{수강신청 총학점}$$

② Pass 과목의 성적은 P(pass) 및 F(fail)로 처리되며,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16.03.11.)

**제51조의2(백분율)** 백분율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식으로 하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신설18.08.07.)

$$[ 40 \times (\text{평점평균} - 1) \div 3.3 + 60 ]$$

**제52조(성적보류처리)** 성적평가가 보류(Incomplete)된 과목에 대하여는 학기 시작 전에 과제물 또는 추

가시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I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 F처리된다.

**제53조(성적이의신청)**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정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06.12.04.)(일부개정15.02.06.)

②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누락, 입력 오류 등 담당교수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된 성적수정요청서를 제출하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신설21.11.05.)

**제54조(추가시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 허가를 담당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고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추가 시험은 당해 학기 종강 전으로 한다.

1.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병역관계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영장의 원본 또는 사본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재학 중 군입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로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당 3분지 2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입대하기 전에 해당 교과목들을 학기말 시험으로 치루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입대가 보류되었을 때는 즉시 복교하여 계속 수강하여야 한다.

**제56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2. 출석미달과목의 성적
3.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제57조(특별처리)** ① 장애를 가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시간 연장과 도우미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03.01.01.)

②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서는 영어 시험 중 듣기평가를 제외한다.(신설03.01.01.)

## 제17장 학사경고와 유급

**제58조(학사경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17.08.11.) (개정21.11.05.)

**제59조(유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16.08.05.)(개정17.08.11.)(개정18.12.14.)

1. 평점평균 0으로 당해 학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개정18.12.14.)(개정21.11.05.)
2. 간호학과 학생으로 당해 학기 전공 교과목을 F등급 받아 학과에서 정한 자(개정18.12.14.)(개정21.11.05.)
  - ② 연속 2회 연속 유급시 제적한다.(개정16.08.05.)
  - ③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조치 된 학생은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며 성적에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개정16.08.05.)(개정18.12.14.)
  - ④ 교과목 F등급으로 인하여 유급조치 된 학생은 한 학기 휴학 후 유급된 학년, 학기로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학기에는 F등급 받았던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하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일 경우는 제65조(학점등록)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신설18.12.14.)(개정21.11.05)

## 제18장 납입금

**제60조(공고)**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한다.

**제61조(분납)**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 기일을 2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납입금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09.05.12.)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삭제09.05.12.)
  6. 예치 후 수업시작 전 자퇴할 경우 원금에서 10%를 감한다.
  7.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신설09.05.12.)
  8. 과 오납의 경우 과 오납된 금액 전액(개정18.02.09.)
- ② 제1항의 반환금액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다(신설 09.05.12.) (개정15.02.06.)

**제63조(납입금 예치)** 재학중인 자가 휴학 시 아래의 납입금반환(예치)기준표에 의해서 예치한다.

- ① 개강일 전에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수업료가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15.02.06.)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

수업 경과일	반환(예치) 금 액	납입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수업료의 1/6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수업료의 1/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기 없음	

**제64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납입금)**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제63조의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예치)기준표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 되지 않는다.(개정09.05.12.)

**제65조(학점등록)** ① 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학점 등록에 따르는 납입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 전액

② 삭제(02.12.)

③ 석사학위 이상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2.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전액

④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학칙 제44조의 2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학점을 취득 하려는 경우 위 ③항의 기준을 적용한다.(05.01.12.)

**제66조(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등록 횟수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4. 10학점부터 12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2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5. 13학점부터 15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5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6. 16학점 이상은 해당 학년 등록금 전액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 제19장 학적부 기재사항

**제67조(정정신청)**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18.12.14.)

1. 이름
2. 생년월일

## 3. 삭제(개정18.12.14.)

**제68조(상벌기재)** 상벌은 해당사항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에 있어서는 전체 최우수, 학년 최우수, 학년 우수까지 학적부에 기록한다.

## 제20장 증명서 발급

**제69조(증명발급)** ① 교학처에서 발급되는 한글, 영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15.02.06.)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휴학증명서
7. 졸업예정증명서(신설16.11.11.)
8. 제적증명서(신설16.11.11.)

위 제 증명서는 당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서학교 및 성서신학교 학생의 경우 2일 이내 신청케 한다. 증명료는 한글 1,000원, 영문 2,000원으로 한다.

## 제21장 졸업 및 수료인정

**제70조(조기졸업)** ① 수업연한이 차기 전에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및 선택교과목을 포함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조기졸업의 자격이 부여된다.(개정18.11.30.)(개정20.11.06)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신입생의 경우 6학기 혹은 7학기, 편입생의 경우 3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5.05.08.)(개정20.11.06)

③ 삭제(개정20.11.06)

④ 삭제(개정15.05.08.)

⑤ 졸업의 결정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한다.(개정15.02.06.)

**제71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개정18.11.30.)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18.11.30.)

1. 인문사회계열 : 130학점
2. 공학계열 : 130학점
3. 자연계열 : 138학점(개정19.02.01.)(개정22.02.11.)

**제72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개정18.11.30.)(개정19.02.01.)(개정22.02.11.)

학년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1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2	65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69학점 이상
3	98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4	13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38학점 이상

## 제22장 계절강좌(신설18.09.07.)

**제73조(계절강좌)** ① 계절강좌는 수강신청 인원 10명 이상 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학처장이 승인한 경우 개설인원 미달 시에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강인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6.12.09.)(개정18.12.14.)

- ② 수강 신청료는 별도로 납부
- ③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가능
- ④ 계절강좌에서 신청한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 ⑤ 대상 : 재적생 및 시간제학생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위원회 결의일인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14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11조는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 제12조는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36조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4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9장, 제28조, 제33조, 제36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21조, 제71조, 제7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21조, 제71조, 제7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50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50조는 2020학년도 신입(편입)학생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9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2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